(토론)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문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박 찬 무**

1. 어려운 발제문

토론문을 쓰려고 발제문을 보니 형형색색의 도형과 그래프에 정신이 없었다. 그림만 보고 토론문을 쓰라고 하신 처사는 토론자를 너무 과대평가 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발제자료를 보면 이게 30분안에 설명될 내용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두 시간씩 3회 정도는 진행해야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쨌든 토론에는 임해야 하니 발제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보태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입장을 공유하며 당사자 조직으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하겠다.

2. 발제에 대한 의견

6쪽 입법동향. 법이 없어서 사경을 못하거나 비활성화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이다.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제도가 영원한 대안일 것이라는 기대에 균열이 있고 1대 99의 문제. 청년들의 칠포 현상 등 국가라는 공동체가 일부 구성원의 이익만 너무 크게 대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고 있다. 양극화라는 것은 결국 찢어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나 입법으로 그 내용을 강제하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은 차선책이라 생각한다.

13쪽을 보며 저는 요즘 유행하는 행정의 융복합이 이쯤의 융복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사회적경제 조직에서는 도덕적 우월감을 낮추고 보수진영에서는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 부녀회와, 라이온스 클럽과, 전경련과 협업하는 시도에 대해 무작정 비판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미 복잡해진 이 사회는 어느 하나의 이즘으로 정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의견

다음으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입법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겠다.

한기협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분산된 행정의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과 지원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이다. 또한 이미 사회적경제 주체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실체 및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인정, 행정통합,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가 있어 왔음을 감안할 때, 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입법 진행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지를 가지고서 지역사회에 기반 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시민사회)의 자발성, 주도성, 지역성이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상 정부 및 광역권 중심(주도)의 법안체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사회적경제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스스로의 의지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적 생명인 만큼,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한기협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한의견을 전한다.

4. 기본법의 성격에 대하여

우선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육성, 지원체계 등을 포괄하고 있어 실행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의 개별성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원·육성, 사회적금융 등의 실행에 관한 내용들을 배제하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기본법을 통해 골격이 마련되면 그것을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정의와 범주, 사회적경제 및 국가·지자체의 역할과 의무, 정책 방향·원칙, 행정 및 거버넌스 체계 등 내용을 간결하고 기본적으로 구성하여 개별법들에 대한 근거법과 매개법으로 작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로 법이 구성된다면 ‘(가칭)사회적경제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가칭)사회적경제 금융에 관한 특별법’, ‘(가칭)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관한 특별법’등의 개별적 특별법의 제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법 내에 근거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거버넌스에 대하여

1) 거버넌스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는 각 분야를 막론하고, 수직적 구조 형태의 통합체계로 인한 감독·통제 기능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민간의 주도성·자발성 및 지역중심성의 결여가 우려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OECD는 지역성, 기업가정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화전략 원칙을 제시하고 그와 관계된 LEE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OECD의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붙이며, 이어 거버넌스 각 파트에 대한 한기협의 의견을 전달한다.

2) 사회적경제위원회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안 가운데, 민간에서 호선된 1인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구성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민간 영역과 결부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전례들을 찾아보더라도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드물뿐더러, 민간의 주도성이 요구되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다룸에 있어서는 민간 영역에서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일,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구성할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심의 총괄을 하게 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사무처를 독립적(위원회 소속)으로 구성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할 경우, 민간 주도성을 잃게 되거나 사무처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3) 소관 부처

정부의 사회적경제 소관 부처에 대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근거로 운영되는 기획재정부가 과연 사회적경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경제의 각 분야를 담당하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 부처 또한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원리인 호혜와 협력에 대한 성격을 부처 간의 관계 설정에도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은 관리·감독 등의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면 지나친 행정 및 정책 기능으로 민간의 자율성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

재한다. 경제(개발)원의 관리·감독 기능강화보다는 지역별 조직의 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연구·기획 등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가 공동운영·관리를 하면서 상시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사업들에 관하여 연합조직 등에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명시하여 민간주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6.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표현한다. 인증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150여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들의 조세포탈등 적절치 않은 방식을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한 비판보다 사회적기업들의 적절치 않은 행위에 대해 더 분노하는 것이 현실이다. 억울함이 없지는 않으나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앞에 쓰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윤리경영이라는 선언을 준비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으며 더욱 공격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의 사회성과를 정량화하고 알려나가야 한다.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투명한 회계와 기업운영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받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 여부를 떠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회적기업은 더욱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운명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서로의 자존감을 높혀가야 한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서는 누구에겐가 주체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스스로 돕지 않으면서 남에게 도와달란 말을 하기 어렵다. 사회적기업간 순환거래를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

7. 나가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치권에서 얻어맞고 있지만 길게 보고 오히려 더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법제도가 당장 없어서 안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이 해 주는 것을 바랄게 아니라 있는 법제도라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집단지성은 유효한 법이다.